



재경원, 사료 부가세 영세율 폐지, 면세 전환 추진

- 부가세 면세시 사료가격 5.8% 인상 요인 발생
- 축산농가 연간 2,978억원 추가 부담 - 축산업 붕괴 우려
- 축산단체, “축산업 포기 처사” 강력 반발·경악
-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영세율 지속 의사 밝혀 안도

- 취재 : 김 동 성 -

재경원, 1월말까지 조세 감면규제법 개정안 국회에 제출 계획

갓은 고생 끝에 18년만에 성취한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시행 6~7개월만에 폐지되고, 대신 부가가치세 면세로 전환될 위기에 처해 있다.

재정경제원은 1월 9일 올해 부족한 세수 확보방안의 하나로 사료와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철회하고, 대신 이들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겠다고 밝히고, 1월말까지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법안(조세감면규제법)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사료와 축산기자재 이외

에 비료와 농약, 농기계 등에 적용해주던 부가세 영세율도 폐지하고, 부가세를 면세키로 했다.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폐지하고 면세로 전환할 경우, 사료와 축산기자재 등은 약 5.8%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인해 축산농가가 연간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사료 2,680억원, 축산기자재 298억원 등 총 2,978억원에 달한다. 또한 농민들은 비료, 농약, 농기계의 부가세 영세율 폐지로 연간 약 2,200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돼 전체 농축산인들의 추가 부담액은 5,178억원에 달하게 된다.

재경원은 이밖에도 농, 수, 축, 임협 등 생산자 단체 중앙회의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의 손비 인정 한도도 종래 80%에

서 50%로 축소하고, 단위조합 법인세 특례세율도 종래 10%에서 12%로 인상하기로 해 영농, 영어 비용이 한층 늘어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폐지되고 면세로 전환되면 사료 또는 축산기자재 원료 구입 단계에서 부담하지 않던 부가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약 5.8%의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되므로, 부가세를 면제받는 것보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즉, 영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품의 최종 판매는 물론, 원료를 구입할 때도 부가세가 0의 세율로 적용돼 부가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나, 부가세를 면세할 경우에는 제품의 최종 판매분에 대해서만 면세되고, 원료를 구입

〈그림 1〉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면세시 차이점

○부가세 10% 부과시

옥수수 구입비=110원		+	제품 생산		=	소비자 가격 165원	
품대	부가세		투자	부가세환급		제품원가	부가세
100원	10원		50원	△10원		150원	15원

○부가세 면세시

옥수수 구입비=110원		+	제품 생산		=	소비자 가격 160원	
품대	부가세		투자 50원			제품원가	부가세 면세
100원	10원					160원	△16원

○부가세 영세율 적용시

옥수수 구입비=110원		+	제품 생산		=	소비자 가격 150원	
품대 100원			투자 50원			품대+투자	

할 때는 부가세 10%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축산단체, 성명서 발표
· 각계에 진정서 제출**

재정경제원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축산농가들은 강력 반발하면서 부가세 영세율을 계속 적용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본회를 비롯한 축협중앙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 등 4개단체는 지난 1월 8일 공동으로 “사료 부가세 영세율 조정 의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철회하는 것은 양축을 포기하라는 강요 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성명서에서 이들 단체들은 “IMF 환파에 따른 환율 인상으로 사료가격이 폭등하고, 전국 도처에서 축산업의 도산이

속출하고 있는 이때에 사료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철회하려는 데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같은 발상이 사실이라면 이 나라 축산업을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의도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폭등한 사료가격과 폭락한 생축가격으로 양축농가들이 살기 위해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때에 정부가 세수 확보를 명분으로 축산농가에게 어려움을 전가시켜 축산업 도산을 부채질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임을 지적한다”고 주장하고, “정부와 정치권은 축산농가 도산으로 인해 야기될 향후 이 나라 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큰 국민적 고통을 가져온다는 점을 인식하고, 축산업을 살릴 수 있는 안정대책을 시급히 제시해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성명서 발표와는 별도로 본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 대한양계협회는 지난 1월 13일 정부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폐지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통령과 국회의장, 재경원장관, 농림부장관, 비상경제대책위원장,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국회 재경위원, 국회 농림수산해양위원, 국민회의·한나라당·자민련 총재와 정책위의장에게 제출했다.

“한 달새 사료가격 40% 폭등, 부가세 면세할 경우 축산업 붕괴” 주장

본회 등은 진정서를 통해 “97년 12월 10일 이후 1개월간 사료가격이 40%나 폭등함으로써 가축의 방매와 매몰 등 축산농가들이 양축의욕을 상실한 마당에 재경원이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폐지하고 면세로 전환하겠다는데 대해 축산농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으며, 특히 부가세 영세율 시행 6개월만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축산을 포기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은 방침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진정서는 “사료값 폭등과 가축 방매로 가축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 양돈농가들의 경우 돼지 1마리를 출하할 경우 생산비에 4만원이나 모자라 적자도산 위기에 처해있다”면서,

“현행대로 사료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해 실의에 빠진 양축농가들이 희망을 가지고 생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밖에 전국농민단체협의회도 1월 14일 “대다수 축산농가와 시설채소 농가들은 환율 상승에 따른 사료 및 유류값 상승으로 생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료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재경원의 발상은 고통분담 차원이 아니라 축산업을 붕괴시키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세율 시행 1년도 안돼 뒤집기 시도에 분노·아연실색

솔직히 대부분의 축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사료 등 축산원자재의 부가세 영세율을 철회할 경우 축산농가들은 최근 한 달 사이에 40%나 폭등한 사료값과 거의 배 가까이나 뛰어난 경유 등 난방비 추가부담, 기타 방역비와 금융기간 이자 추가 부담 등으로 생산비가 대폭 상승, 축산업은 곧 붕괴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축산업의 붕괴는 곧 대규모 축산물 수입으로 이어져, 면화나 밀과 같은 코스를 밟아, 축산업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으로 이어질 지 모

〈표 1〉 사료 부가세 영세율을 면세로 전환시 경영비 상승률

구 분	사료비 인상에 따른 경영비 상승률	부가세 면제시 감면 축소율(%)	합 계 (경영비 상승률)
한 우(비육우)	14.8%	2.6%	17.4%
젖 소(우유)	28.4%	4.6%	33.0%
돼 지(비육돈)	31.0%	5.4%	36.4%
산란계(계란)	33.6%	5.8%	39.4%
육 계(닭고기)	32.5%	5.6%	38.1%

〈표 2〉 축산기가지 영세율 적용과 면세시의 조세감면액 비교

구 분	조 세 감 면 액			연간 매출액
	영세율적용시	면세 적용시	차 액	
국내 산	225억원	77억원	178억원	2,552억원
수입 산	172	52	120	1,715
합 계	427	129	298	4,267

*환율 1,500원 : 1달러 적용(영세율 적용 50개품목만 산출)

〈표 3〉 부가세 부과에 따른 사료가격 비교표

(단위 : 원/톤)

구 분	과 세 시	면 세 시	영 세 율 시	
제 조 원 가	원 재 료 비	130,677	140,419	130,677
	노 무 비	8,047	8,041	8,041
	제 조 경 비	5,786	6,028	5,786
	소 계	144,504	154,488	144,504
사 업 비 용	6,887	6,952	6,887	
사 업 수 익	347	347	347	
지 도 관 리 비	20,838	20,838	20,838	
판 매 대 금	171,882	181,931	171,882	
부 가 가 치 세	17,188	0	0	
판 매 가 격	189,070	181,931	171,882	
차 액	-	- 7,139	-17,188	
증 감 륜(%)	-	- 3.8	-9.1	

른다는 우려가 짙게 깔려 있다.

따라서 사료를 비롯한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을 면세로 전환하겠다는 재경원의 발상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18년여에 걸친 축산농가의 간절한 요구를 온갖 핑계를 대며 머뭇거리다가, 대선공약을 지키라는 축산농민들의

요구에 밀려 어렵사리 들어준 영세율 적용을 이제 시행한지 불과 6~7개월만에, 개정법률 공포 잉크도 채마르기 전에 철회하겠다는 재경원의 발상에 대다수 축산농가들은 분노와 울분을 토로하면서 아연실색하고 있다. 이는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 농축산인을 속인 것이라는 축산농가들의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특히 불과 한 달 사이에 사료가격이 40%나 뛰어 오르고, 축산농가들이 사료비도 제대로 못내 가축이 굶어죽고 가축을 투매, 값이 폭락한 상태에서 또 이같은 발상이 나왔다는 데에서 한국 축산업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정부가 전체 축산물을 수입해 먹겠다는 정책변경을 하지 않고서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발상이 아무 거리낌 없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영세울 적용 지속 의사 밝혀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1월 18일 TV로 생중계된 국민과의 대화 프로에 출연해 사료 등 농어업용 기자재에 부가세 영세율을 계속 적용하겠다고 밝혀 재경원 방침은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비상경제대책위원회(위원장 김용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같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도 1월 14일 하경근 정책위원장과 나오연 정조실장, 이상배 농림수산해양분과위원장과 위원들이 긴급회의를 갖고 “갓 시작한 사료부가세 영세율 적용과 각종 농수산물 관련 세제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우리가 외환위기에 따른 IMF 경제체제를 맞아 예산을 삭감해서 긴축예산으로 다시 짜고, 부족한 세수를 확대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이나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니다. 또 노,사,정이 함께 고통을 분담하기로 하고, 노사정협의회를 구성한 마당에, 또 어찌면 수십, 수백만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내몰리게 될 정리해고제가 도입될지도 모르는 마당에 우리 축산인들이 축산인들만의 이익을 지키겠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사료 등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문제는 단순한 평면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먹거리는 경제의 기본이고, 근본이다. 가뜩이나 사료값 폭등에 쪼들려있는 축산농가들에게 더이상 짐을 지우지 말고, 실낱같은 양축의 속세 찬물을 끼얹는 수를 범하지 않기를 거듭 촉구한다.

그러나 축산업을 비롯한 1차 산업은 식량산업이란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단순히 고통분담이란 차원에서 다른 부문과 동일시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이번 IMF 위기가 외환부족에서 비롯되었듯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이 고작 27%에 불과하다는 점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만일 외환 위기와 같이 전세계에 식량위기가 도래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 중 73%(약 3,350

만명)가 기아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모 교수의 연구결과를 그저 가정으로 치부하고 묵살해서는 안된다. 작금의 외환위기도 그동안 연구기관들이 경고한 외환 부족사태 우려 보고서를 무시하고,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는가?

축산업도 식량산업이라는 정부당국 인식 확립 필요

따라서 사료 등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문제는 이같은 인식하에서 접근해야 하며, 단순한 평면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먹거리는 경제의 기본이고, 근본이다. 가뜩이나 사료값 폭등에 쪼들려있는 축산농가들에게 더이상 짐을 지우지 말고, 실낱같은 양축의욕에 찬물을 끼얹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거듭 촉구한다. 재경원은 한시바삐 영세율 적용 폐지 방침을 거두어들이고, 1차산업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해주길 바란다.

또한 축산농가들도 축산단체를 중심으로 굳게 뭉쳐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축산업계가 천신만고 끝에 얻어낸 결과물임을 명심하고, 이번 재경원의 방침이 철회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비상경제대책위 위원 등에게 이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하겠다. 養豚